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



TRINITY AIRWAYS

목차

제1장 총칙

1.1 목적	1-1
1.2 적용범위	1-1
1.3 권한과 역할	1-1

제2장 구성

2.1 구성	2-1
2.2 위원장	2-1

제3장 회의

3.1 개최시기	3-1
3.2 소집권자	3-1
3.3 소집절차	3-1
3.4 결의방법	3-1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3-1
3.6 결의사항	3-2
3.7 통지의무	3-2
3.8 의사록	3-2
3.9 간사	3-2
3.10 규정의 제정 및 폐기	3-2

제4장 부칙

4.1 시행일	4-1
---------	-----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및 이사회규정 3.4에 따라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이하 “회사”라 한다)의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권한과 역할

1.3.1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주주총회에서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자격 및 역할 수행,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 주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1.3.2 위원회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2.1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3.2.2 이사회가 중요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행위 이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독립**이사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하고 판단하는 자

1.3.3 위원회는 1.3.1에서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자의 수락의사 유무를 확인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

1.3.4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독립**이사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해 심사한다.

1.3.5 위원회는 경영진 및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장에게 **독립**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2.1 구성

2.1.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1.2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중 독립이사는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1.3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동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2.2 위원장

2.2.1 위원회는 본 규정 3.4에 따라 위원회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한다.

2.2.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2.3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 위원선임일 기준 먼저 선임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체 례 및 복사본은 Uncl... Document

제3장 회 의

3.1 개최시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소집권자

3.2.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2.2.3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3 소집절차

3.3.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회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3.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3.3.1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4 결의방법

3.4.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4.2 위원회는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4.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5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3.5.1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5.2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6 결의사항

- 3.6.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6.2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6.3 독립이사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 3.6.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3.7 통지의무

- 3.7.1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7.2 통지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3.8 의사록

- 3.8.1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3.8.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9 간사

- 3.9.1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3.9.2 간사는 이사회지원부서 CM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 을 담당한다.

3.10 규정의 제정 및 폐기

본 규정의 제정 및 폐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4장 부 칙

4.1 시행일

4.1.1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4.1.2 본 규정은 2024년 11월 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1.3 본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1.4 본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본 및 복사본은 Uncontrolled Document임